

학습역량지원센터 규정

제정 2017.03.01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습역량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학생역량 강화 및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의 (전공)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
2.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및 지원
3.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·지원
4. 기타 위의 각호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사업

제3조(조직) ① 본 센터는 센터장과, 소속 교수,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관장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학습역량지원 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운영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8인 이내로 구성하되, 본 대학 교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업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- ① 학습역량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 자문
- ② 학습역량지원센터에서 개발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
- ③ 기타 학습역량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